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1. 17 선고 2015가단5314846 판결 [구상금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

피고 1. A 주식회사

2. B

3. C

변론 종결 2016. 3. 8.(피고 1, 2에 대하여)

2016. 10. 11.(피고 3에 대하여)

판결 선고 2016. 11. 17.

주 문

1. 피고 A 주식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6.부터 2015. 7. 2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2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5. 5. 4.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,
나.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2015. 5. 4. 접수 제39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,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 제2항 및 피고 A 주식회사(이하 '피고 회사'라 한다)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. 6. 26.부터 2015. 7. 2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2015. 9. 2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5. 2. 13.경 피고 B의 연대보증하에 피고 회사와 상품판매대금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한국하니소(주)	1억 원	2015. 1. 1. ~ 2015. 12. 31.	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	보험금 지급일 다음날 ~ 30일	연 6%
				31일 ~ 90일	연 9%
				91일 이후	연 15%

나. 위 한국하니소는 2015. 6. 3. 원고에게 보험사고(피고 회사 2015. 5. 7.자 부도)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. 6. 25. 위 한국하니소에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.

다. 피고 B은 위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불과 3일 전인 2015. 5. 4. 피고 C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이라 한다)을 4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(이하 '이 사건 매매계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(이하 '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'라 한다)를 마쳐주었다.

그런데 여태껏 피고 C가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는 매매대금은 이 사건 매매계약 후인 2015. 5. 6.자

1억 원이 전부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전인 2015. 3. 17.자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
강진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(채권최고액: 2억 6,000만 원)의 채무자도 여전히
피고 B으로 남아 있다.

라.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의 가액이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에
있었는바 그 내역(단위: 원)은 아래와 같다.

적극재산	부동산	
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제3층 제302호	1,140,000,000	
부천시 원미구 E 외 4필지 F아파트 제214동 제16층 제1603호	510,000,000	
경기 연천군 G 임야 126m ²	3,855,600	
경기 연천군 H 전 347㎡ 중 415/467 지분	9,000,000	
경기 연천군 I 전 1098m ²	37,771,200	
경기 연천군 J 답 526m ²	18,094,400	
대전 대덕구 K 대 130,069m ² 중 48/130,069 지분	35,040,000	
이 사건 부동산	400,000,000	
소계	2,153,761,200	
소극재산	채권자	채무액
전문건설공제조합(가압류권자)	500,000,000	
(주)하나은행(가압류권자)	212,000,000	
신용보증기금(가압류권자)	1,433,920,000	
원고(가압류권자)	100,000,000	
한국유리공업(주)(가압류권자)	116,640,636	
(주)신한은행(근저당권자)	700,000,000	
강진농업협동조합(근저당권자)	200,000,000	
소계	3,262,560,636	

[인정근거] 피고1, 2에 대하여: 자백간주(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), 피고 3에 대하여: 다툼 없는
사실, 갑 제1 내지 9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다 제2, 3호증의 각 기재,
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피고 회사,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 회사,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5. 6. 26.부터 그 30일 이후인 2015. 7. 25.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인 2015. 9. 23.까지는 연 9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(2015. 10. 19.)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, 2015. 10. 1.부터 시행된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. 10. 1.부터는 연 15%의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받아들인다.

3.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

가.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, 무자력의 정도,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,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,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다72554 판결 참조).

또한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근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81870 판결 참조).

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, 피고 B이 피고 C와 체결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부터 가까운 장래에 피고 B에게 구상권을 가지는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.

나.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

1) 피고 C는 2013년경부터 평소 'L'이라 불리던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과수농사를 짓고 있었고 해마다 피고 B가 남편인 M에게 위 부동산을 매수하라고 하였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 제안을 거절하였는데 마침 2015년 3월경 1억 원의 여유자금이 생겼을 때 피고 B가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수하되 먼저 위 강진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채무 2억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억 원 중 1억 원은 2015년 가을경 단감수매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지급하고 우선은 1억 원만 지급하라고 제안하였기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된 것일 뿐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위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.

2) 그런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,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·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 참조). 위 법리에 따라 앞서 본 인정사실을 살펴보면, 을다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 C의 사해의사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다. 사정이 이렇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.

한편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넘어서까지도 취소를 구할 수 있다(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7다10864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원고의 피보전채권 금액보다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피고 C에게 이전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나, 위와 같이 원고 이외에도 신용보증기금을 비롯한 많은 채권자들이 있고 이들에게 부담하는 피고 B의 소극재산이 3,262,560,636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위 피보전채권 금액을 넘어 이 사건

매매계약 전체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본다.

결국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회복을 명함이 타당하므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 전부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,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윤종섭

별지